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정부의 57개 청년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일원화

01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3개 부처, 57개 사업으로 분산된 2조1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로 일원화하는 “청년 고용대책” 을 21일 발표 예정
 -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하는 모든 청년(18~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최대6개월) 과 면접경비(월 5만원씩 5회)를 주고, 우수 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600만원(월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
-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여섯 번째 청년고용 대책으로, 기존에 사업주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
 - 취업난의 원인을 청년의 낮은 경제력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 단위가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지만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 중앙정부정책과 별개로 지자체들은 청년계층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 결혼과 출산, 학업 및 취업 등 미래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내 일하는 청년 계층의 사회적 경력 확충과 일자리 유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학자금 대출, 주거비, 구직활동,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진취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청년이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의의가 있음

정책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만18세~34세 중위소득 80%(1인 가구 130만원) 이하	만 18세~34세 최저생계비 200%(1인 가구 200만원) 이하
적립목적	일자리 유지와 취업 장려,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저축기간	3년	2년, 3년
저축매칭	비수급자 1:1 (민간후원금 추가 지원)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주요대상	일자리 유지와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특수 계층)	목돈 마련의 의지가 있는 청년(일반 계층)
납입한도	10만원	5, 10, 15만원
지원액	3년 적립시 약 1,000만원	3년 적립시 약 800만원
지원조건	3년간 일자리 유지 시 전액 지급	지원기간 중 50% 이상 근로 시 전액 지급
특이사항	근로소득 공제율(10%~30%) 차등 적용	
추진상황	대상자 500명 모집 중 ('16.3.1~4.1)	상반기 500명 모집 예정(3월 중 공고)

02 경기도 시사점

- 「일하는 청년통장」 과 유관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 등 정책 효과 극대화 도모
 - 3년 만기 환급자에게 따복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타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통장 유지를 유도하는 한편, 해봉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청년통장과 연계성을 고려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 자금 조달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

01 주요 내용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정미경, 새누리당 수원을)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적안정적인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자인 사회적 투자자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추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사회적 거래소’ 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자본시장의 다양한 자금공급 주체들에 의해 지속적·안정적인 자금조달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거래소’ 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이 사회적 자본시장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유통되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 가능
-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경우, 금번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법적범위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 투자에 의한 자금조달 창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 협동조합의 경우 만 3년 동안 약 9,000개 이상의 조직들이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유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협동조합실태조사(2015년)* 결과에 의하면, 금융기관 대출경험이 있는 협동조합은 9.2%로 나타났으며,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는 담보부족(22.6%), 매출실적의 부재(21.6%), 조합원 전원보증(10.6%)의 순으로 나타남

*전국의 2,257개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체계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 현재 개정안 체계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따복공동체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제도 개선 이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
-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 구축
 - 경기도 내 지역금융(신협, 마을금고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동으로 지역기금 조성하거나, ‘사회적 거래소’ 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채권 발행 등 제도 도입을 고민
 - 자금을 수혜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경영컨설팅도 병행 추진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요양병원, 관리체계 및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암·재활·치매 전문 등 특화 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하고 수가, 급여체계 및 환자기준 등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

-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수가 급격히 증가
 - 요양병원은 2005년 203곳에서 2016년 현재 1,382곳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내 요양병원도 2009년 128곳에서 2016년 3월 현재 279곳으로 2배 이상 증가
 -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전체 요양병원의 약 20%(279곳)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은 인구밀도가 높으면서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

〈표 1〉 2016년 전국 시도별 요양병원 현황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강원
요양병원 수	1,382	279	102	65	42	75	7	53	31
시도별 비율	100.0	20.2	7.4	4.7	3.0	5.4	0.5	3.8	2.2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요양병원 수	50	80	69	61	42	112	114	192	8
시도별 비율	3.6	5.8	5.0	4.4	3.0	8.1	8.2	13.9	0.6

* 단위: 개소, %

- 경기도 내 279개 요양병원은 주로 부천·고양·용인·안산·수원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 도내 시군별로는 부천(27곳)·고양(26곳)·용인(23곳)·안산(20곳)·수원(17곳) 순으로 요양병원이 많이 설치된 반면, 과천·연천·구리·가평은 0~2곳만 설치되어 시군 간 차이

〈표 2〉 2016년 경기도 시군별 요양병원 현황

시군	요양병원		시군	요양병원		시군	요양병원		시군	요양병원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수원	17	(6.1)	안산	20	(7.2)	의왕	4	(1.4)	광주	5	(1.8)
성남	13	(4.7)	고양	26	(9.3)	하남	3	(1.1)	양주	6	(2.2)
의정부	6	(2.2)	과천	0	(0.0)	용인	23	(8.2)	포천	6	(2.2)
안양	7	(2.5)	구리	2	(0.7)	파주	13	(4.7)	여주	4	(1.4)
부천	27	(9.7)	남양주	13	(4.7)	이천	3	(1.1)	연천	1	(0.4)
광명	4	(1.4)	오산	4	(1.4)	안성	10	(3.6)	가평	2	(0.7)
평택	5	(1.8)	시흥	13	(4.7)	김포	6	(2.2)	양평	8	(2.9)
동두천	9	(3.2)	군포	7	(2.5)	화성	12	(4.3)	경기	279	(100)

* 단위: 개소, %

- 도내 요양병원 종합점수는 67.7점으로 전국평균(70.3점)보다 낮고, 1등급 선정기관 비율이 전국 시도 중 14번째에 불과
 -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진료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종합점수 평균은 70.3점이며, 부산(75.8점), 전남(73.2점), 광주·전북(71.9점), 경북(71.4점) 순임. 경기도는 67.7점으로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해당
 - 또한 등급별 평가에서 도내 요양병원 중 1등급은 7.5%에 그쳐 전국평균(12.0%)보다 저조

〈표 3〉 경기도 요양병원 등급 현황 (2012년)

	평가대상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등급제외
경기도	188 (100)	14 (7.5)	24 (12.8)	57 (30.3)	48 (25.5)	38 (20.2)	7 (3.7)
전국	937 (100)	112 (12.0)	184 (19.6)	251 (26.8)	239 (25.5)	123 (13.1)	28 (3.0)

- 도내 요양병원 질 관리 및 요양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개선 필요
 - 요양병원 난립, 노인의학 개념 부재, 전문인력 부족, 노인의료 시설 및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편 노력 필요

03 FACT CHECK

요양병원, 병원인가? 요양시설인가?

- 요양병원이 본연의 치료 목적을 잃고 노인의 장기 숙소로 변해가고 있다(동아일보, 갈곳없는 노인들, 멸절환 환자 생활, 없던 병도 생길 지경. '16.3.6. 기사)
-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요양 시설 대신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문제에서 비롯됨
 - 요양병원은 2005년 203곳에서 2015년 1,372곳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같은 기간 1570억 원에서 4조2091억 원으로 상승
 - 요양병원은 의사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치료 수가가 아닌 환자의 등급별 일당 치료비의 60-95%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아무런 의료행위 없이도 수익이 발생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적용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설립	의사 또는 한의사만 가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상주	축탁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상주
시설인원수	1,372개소(33만2000명)	5,083개소(13만2000명)
환자부담비	60~200만원	40~100만원

- 요양병원이 원래 목적대로 노인성질환의 치료나 외과수술 후 회복을 위한 병원으로 기능하고, 돌봄과 생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요양시설에, 암말기 환자나 임종직전의 입소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돌봄-호스피스 체계 구축이 필요

04 통계로 보는 복지

2015 가계동향,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0.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60대 이상 가구 소득(300만4천원)은 6.8% 늘어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가구는 505만5천원으로 2.0% 가량 증가
- 39세 이하 가구 중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40만8천원인 반면, 근로자가구 외의 경우 389만6천원으로 51만1천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39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주거·교통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소득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단위: 천원, %

*이미지 자료(중): 연합뉴스, 3.8. 일차

*가계동향조사 : 분기별 8,700가구를 표본으로 조사